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1. 20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어,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로 명칭이 통합되었으며,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 기준과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관련조항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조항으로 관련규정 삭제 및 과태료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부과기준[별지2]를 삭제 코자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명칭통합(제4조제1항)
- 나. 법령에 근거없는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기준[별표1]을 삭제(제5조제1항)
- 다. 법령에 근거없는 대행업체의 계약해지 관련 규정삭제(제5조제2항제5호,제3,4항)
- 라. 과태료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규정 삭제
(제17조 제1항 및 [별지2])

3. 관계법령

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, 제35조, 제58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중 “정화조(단독및합병정화조),오수정화시설”을 “단독정화조, 오수처리시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중 “오수정화시설”을 “오수처리시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중 “이경우에 대행업자는 [별표1]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”를 삭제하고 동조 “제2항제5호”와 동조 “제3항 및 제4항”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중 “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지2와 같다”를 “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(안)
<p>5. <u>계약해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1. <u>법제55조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등 관련영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</u></p> <p>2. <u>법제55조제11호의 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</u></p> <p>3. <u>법제58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3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</u></p> <p>4. <u>기타 분뇨의 수집,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	<p>5. (삭제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삭제)</p>
<p>④<u>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3월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④ (삭제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과태료부과) ①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지 2와 같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17조(과태료부과)①-----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